

2000. 12. 23(土)

제66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

제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 
심사보고서

總務社會委員會

## 제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

### 심 사 보 고 서

#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0. 12. 2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제천시장  
나. 회부일자 : 2000. 12. 4  
다. 상정일자 : 2000. 12. 19(제66회제2차정례회총무위원회제4차회의)

#### 2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사회복지과장 이춘호)

##### 가. 제안이유

- 조례에 의한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할 때 추천받는 절차를 간소화 함과 아울러 융자금의 상환에 있어 조건을 완화시키는 개정 사항임.

##### 나. 주요내용

###### ○ 개정

- 조례 제5조(신청절차)제1항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의 새마을 지도자, 통·리장 및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...라고 되어있는 것을 “새마을지도자, 통·리장”을 삭제
- 제6조(융자금의 상환 등)제2항 제1호의 “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 받은 목적이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할 때”를 삭제

#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신태훈)

##### ○ 법규적검토

- 조례 제5조(신청절차)제1항의 경우 법규상 의무를 지는 사항이 아님으로 위배사항은 없다 할 것이며
- 제6조(융자금의 상환 등)제2항 제1호의 경우는 동조례에 의한 기금융자의 목적이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자금이며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채권 채무의 관계에 있으므로 타 용도로의 사용부분에 대한 관리가 사실상 어렵고 실효가 없다 하겠으므로 폐지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.
- 아울러 동조례에 대하여는 2000. 11. 10 ~ 11. 2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던 결과 별다른 이견 제시는 없었고 2000. 11. 30 제천시 조례·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바 있음

### ○ 행정적 검토

- 동조례는 행정규제 기본법 제3조에 의거하여 기존 규제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검토되었는 바,
- 행정규제 개혁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2000. 9. 5일 개최한 제천시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받아들여 의결된 내용으로 규제완화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바람직한 개정사항이라 판단됨.

## 4. 질의답변 요지

### 가) 질의요지

- 1) 생활안정기금 융자 한도액은 얼마이며, 현재까지 몇 건을 융자해 주었는가?(조병석위원)
- 2) 상환관계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가? (조병석위원)

3) 융자금을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관리해 본 적이 있는가?  
(조병석위원)

나) 답변요지(사회복지과장 이준호)

- 1) 융자 한도액은 500만원이며, 금년에 융자는 2건을 해주었고 총 35건 정도를 융자해 주었다.
- 2) 상환관계는 2년거치 3년상환으로 연리가 5%인데 과년도는 체납액이 2,200만원정도 되며,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.
- 3) 현재는 관리해 본적이 없다.

## 5. 토론요지

“없음”

## 6. 심사결과

“원안가결”

## 7. 심사보고 불임서류

제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1부. 끝.